사업장 외 간주근로시간제 합의서

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의 대표자 정인서와 근로자대표 이정석은 사업장 외 간주근로시간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

제1조【목적】 이 합의서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에 의한 사업장 외 간주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【적용대상자】 이 합의서의 내용은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'예술강사' 직종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【간주근로시간 등】 ① 적용 대상 근로자가 '원격수업' 방식의 일환으로 학교와 교육 콘텐츠 제작·공급에 대한 합의를 하고 근로자가 그 내용에 근거하여 학교에 교육 콘텐츠를 제작·공급하는 경우, '1차시분 교육 콘텐츠의 제작·공급 당 4시수의 출강시수'를 근로한 것으로 인정한다.
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 소정의 '1차시분'은 학교와 예술강사가 체결한 '저작물 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' 내 기재된 저작물의 분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.

제4조【유효기간】 이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.

2020년 4월 29일

대표자 정인서 (인) **근로자대표** 이정석 (인)